

#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제정에 따른 전라북도 대응방안

2008. 6. / 전북발전연구원 이슈브리핑



## 연구진

---

이성재 • 전북발전연구원 부연구위원  
이영찬 • 전북발전연구원 연구위원  
이창현 • 전북발전연구원 연구위원

---

이 이슈브리핑의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서  
전라북도의 정책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 낙후지역을 중심으로 추진되어 온 기존의 사업들을 광역적·체계적으로 추진하고, 민간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이하 ‘신투법’)이 제정(‘08.9 시행)되었음

- 전라북도는 낙후지역과 발전잠재력 등을 고려할 때 신발전지역종합발전구역의 지정현황과 그간의 사업규모 등을 고려할 때 **구역지정이 반드시 필요**하며, 지정 가능성도 매우 높은 것으로 분석됨

- ✓ 신투법 사업(개축, 오지, 도서 등) 전북 규모 : 연평균 753억원(전북 총 15,589억원 중 50% 이상이 민간투자 부문이나 이행수준이 저조, 민간투자 유인을 통해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신투법 활용필요)

- 따라서, 전라북도에서는 신발전지역종합발전구역의 지정을 통해 기 추진되어온 낙후지역 관련 사업들을 광역화하고, 민간투자 촉진을 유인할 수 있는 **전라북도 신발전지역종합발전계획**이 수립되어야 함

#### ✓ 전라북도의 지정방안

- ① 전남에 필적하는 유형 중심의 지정신청 / 선 지정이 요구되는 소수 지구(특정지역 중심) 지정하는 방안
- ② 전북을 권역화 한 동부권, 내륙 및 서남부권으로 구분하여 지정하는 방안
- ③ 전북 전역을 대상으로 지정하는 방안
  - ※ 기업도시와 같이 민간부문의 투자의지 확인 및 공동 계획수립 필요

#### ● 향후대처

- ✓ 민간부문을 대상으로 한 투자수요와 규모 및 입지 등의 조속한 조사 및 파악
  - ※ 공모 고시방식보다는 도지사 요청방식에 의한 지정 내용이 신투법에 포함되어 있어 준비된 지역부터 신청-심의-고시되는 절차로 진행될 가능성 높음
  - 1차 고시 목표일 경우 **진행로드맵 : 민간부문의 투자의지를 담은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계획수립(‘08.10) 및 이행절차 완료(‘08.12)필요**
  - ※ 일반적으로 18~21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며, 정부의 일정은 신발전지역에 투자할 기업의 탐색과 현행법(하위법령) 준비 일정을 고려할 때, 2008년내 고시는 다소 무리가 있을 것으로 판단

- 금번 신투법 시행을 계기로 전라북도내 시·군별로 적용되고 있는 의제를 담은 개별법 및 특별법의 효과와 적극적 활용을 위한 진단과 방안의 강구가 필요

# 목 차

##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제정에 따른 전라북도 대응방안

- I.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이란?
  - 1. 신투법 제정 목적 ..... 1
  - 2. 신투법 제정 의미 ..... 1
- II. 신투법 제정에 따른 쟁점과 대응 ..... 3
- III. 신발전지역종합발전구역 지정 필요한가?
  - 1. 도내 낙후지역 주요개발사업의 현황 및 문제점 ..... 4
  - 2. 정부 및 타 지역 동향 ..... 5
  - 3. 신발전지역종합발전구역 지정 필요성 ..... 5
- IV. 신발전지역종합발전계획 수립 전략
  - 1. 특정지역 중심의 신발전구역 지정방안 ..... 7
  - 2. 전북의 권역화에 따른 신발전구역 지정방안 ..... 8
  - 3. 전북권 전역 지정요구지역 중심의 신발전구역 지정방안 ..... 9
- V. 향후 대응방안
  - 1. 신발전지역종합발전계획 수립 로드맵 ..... 10
  - 2. 신투법의 향후 동향에 대응 ..... 11
  - 3. 신투법 시행을 계기로 도내 의제관련법 적용지역 진단 ..... 12

# I.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이란?

## 1. 신투법 제정 목적

- 낙후지역을 발전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민간투자 촉진을 위한 제도
  - 낙후지역 발전의 전기를 마련하기 위해 지역특성과 발전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종합적인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인 개발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08.3.28 제정, '08.9.29 시행)
  - 발전 잠재력이 높은 지역을 인접지역과 연계하여 광역적으로 개발함으로써 낙후지역을 새로운 발전 거점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하고, 민간투자 촉진을 위한 제도적 지원을 위하여 신투법 제정

## 2. 신투법 제정 의미

- 개별적·단편적 개발에서 탈피하여 광역적·체계적 개발 가능
  - 기존 낙후지역 개발제도는 국지적·개별적·단편적으로 추진되어 비효율성과 사업간 연계미흡으로 효율성이 저하되었으나, 신투법 제정에 따른 종합계획 수립으로 개별단위 사업의 광역화 및 체계화 가능
- 사회간접자본 및 민자유치의 활성화
  - 낙후지역과 인접 시·군을 연계한 종합발전구역 지정을 통해 사업의 규모화가 가능함에 따라, 지역간 연계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SOC 사업 추진 및 투자촉진 지원을 통한 민간 참여의 활성화 가능(기존의 사업들은 관련법령에 의해 지역의 범위가 한정되어 경직된 형태의 사업추진)
- 도내 낙후지역을 중심으로 한 개발사업의 실효성 제고
  - 도내 신발전지역이 집중되어 있는 동부권의 경우, 산림, 수질, 농지 등에 대한 환경규제 등으로 발전사업 추진에 한계가 있었으나, 신발전 지역종합발전구역 지정은 개발사업의 투자촉진 및 실천적 사업으로의 전환 가능

✓ **신발전지역**

-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거 **오지·도서·접경지역·개축지구** 및 행안부장관이 인구감소율·재정상황 등을 평가, **낙후지역**으로 지정한 지역

✓ **신발전지역종합발전구역**

- 신발전지역과 그 인접 시·군을 광역적으로 연계하여 종합적·체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신발전지역종합발전계획의 수립을 통해 지정된 구역

✓ **신투법 주요내용**

- 개별사업 절차 간소화 및 규제완화(건축법 등 총 36개법률 72개의 인·허가사항 의제처리)
- 사업시행자 및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조세·부담금의 감면, 입주기업 자금 지원, 채무보증, 기반시설 및 보조금 지원, 국·공유재산 임대·매각 등)
- 투자촉진 및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임대전용산업단지의 우선지정, 학교·의료시설 설치에 관한 특례, 주택공급에 관한 특례 등)

● **종합발전구역과 기존 지역개발제도와 비교**

구분	종합발전구역	개발촉진지구	신활력지역	지역발전특화특구
근거법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지역균형개발 및 중소기업발전에 관한특별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지역특화발전특구법
목적	낙후지역의 종합적 개발사업 시행과 투자촉진으로 국가균형 발전 및 새로운 국가성장동력 창출	개발수준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은 지역의 개발촉진	소외되고 낙후된 지역에 대하여 지역혁신을 통해 활력 회복	지역특성에 맞게 선택적으로 규제특례를 적용하여 지역의 특화발전,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지정 기준	낙후지역 및 인근지역, 기반시설, 지역산업 및 부존자원 여건, 관광, 문화, 자연경관 자원	인구증가율, 도로율, 재정 자립도, 제조업 종사자 비율	인구변화율, 인구밀도, 소득할주민세, 재정력지수	특화사업여건, 규제특례와 특화사업과 연관성
계획 관련	발전촉진지구 → 개발계획 투자촉진지구 → 투자계획	개발촉진지구→개발계획	국가균형발전계획→ 지역혁신발전계획→ 지역혁신발전시행계획	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
사업 내용	정주, 산업, 유통, 관광 기반 조성 및 투자 촉진	생활기반조성, 기반시설 정비, 관광휴양지 조성	지역산업육성, 삶의 질 향상, 민간투자유도	사업규정 없음
추진 기구	낙후지역발전위원회 낙후지역발전기획단 행정기구	없음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가균형발전기획단 시도지역혁신협의회	지역특화발전특구 위원회
인허가 의제	36개법 72개 인허가 의제	29개법 46개 인허가 의제	없음	67개법 7개 도시관리계획 의제 13개법 16개 인허가 의제
주요 지원 사항	시행자 및 입주기업지원 (조세, 자금지원 등) 민자유치활성화 (지역개발 법인설립특례 등) 정주환경 개선 (교육, 의료, 문화관광시설지원 등) 투자촉진 특례 (개발행위허가 등 타법령 배제)	토지수용, 공공시설 등 귀속 조성토지 등 양도, 기반 시설설치	국고보조 차등지원 ('05~'07, 3년간 매년 2000억원씩)	59개 규제 특례 일반규제 특례 (개별법상 규제완화) 권한이양특례 (특구의 장애 권한이양) 토지이용규제 특례 (토지이용인허가절차의제)

## II. 신투법 제정에 따른 쟁점과 대응

### ○ 개발이익이 신발전지역 보다 인접지역으로 집중될 우려

- 신투법을 통해 낙후지역에 미 해당되는 상당수의 자치단체가 인접 낙후지역을 포함하여 신발전구역으로 지정, 사업을 추진할 가능성을 내재하고 있음. 이는 민간투자의 유인책이 될 수도 있으나, 신발전 지역의 발전이 아닌 인접지역의 발전으로 효과가 전가될 가능성 상존
  - ※ 시행령에서 인접 시군의 상한면적을 제한(50% 미만)명시
- 낙후지역 인접 시지역이 민간부문의 투자에 장점을 상대적으로 높게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발전촉진·투자촉진 지구로 지정가능성 높아 전라북도가 이를 활용하는 계획 수립 필요

### ○ 동·서·남해안권발전 특별법과의 관계 모호

- 최근 제정된 동·서·남해안권발전 특별법('07.12.27 제정, '08.6.28 시행)과는 적용 공간대상에서 일부 중복가능성 내재
- 동·서·남해안권발전 특별법 적용대상인 총 71개 지자체 중 약 50%가 신발전지역에 해당하여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의 시행령 및 규칙 등과 관련 법령간 관계 해석 및 추진방안 사전 설정
-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특별법과 동서남해안발전 특별법 비교분석

구 분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동서·남해안발전 특별법
목 적	낙후지역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개발	동북아시아 경제권 및 관광지역으로 육성
적용대상	발전잠재력이 있는 낙후지역과 인접지역	동서남해 연안권 기초자치단체
지원사항	사업시행, 투자유치 특례 등	해안지역 규제완화 중심

### ○ 전국을 대상으로 한 지정보다는 특정지역(서남권) 중심의 지정 우려

- 서남권(목포, 무안, 신안) 개발을 목적으로 추진된 특별법(서남권 종합 발전계획 '08~'20년, 약 25조원)의 추진을 위해 태동되었다는 이유에서 특정한 지역(서남권)만을 위한 특별법이 될 가능성 내재
- 특별법 제정 이후 시행령 및 규칙 등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특정지역의 사업추진만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사전 동향 파악 및 전북 자체의 구역(지구)지정을 위한 준비에 철저

### III. 신발전지역종합발전구역 지정 필요한가?

#### 1. 도내 낙후지역 주요 개발사업 현황 및 문제점

##### ○ 도내 낙후지역 주요 개발사업 현황

- 도내 신발전지역에 해당하는 기존의 낙후지역을 대상으로 추진된 주요 사업은 오지종합개발사업, 개발촉진지구, 도서종합개발 사업 등 해당
- 오지종합개발사업은 현재 12개 시·군 46개 오지면을 대상으로 3차 사업('05~'09), 도서종합개발사업은 20개 도서를 대상으로 3차사업('08~'17), 개발촉진지구 관련 사업은 무주, 장수, 순창, 고창을 대상으로 사업이 추진중에 있음
- 신발전지역 지정요건에 해당하는 현 추진사업

구분	사업규모	관련법
오지종합개발사업 ('05~'09)	소득 및 생산기반시설, 문화복지시설 등 (416건)	오지개발촉진법(폐지)
도서종합개발사업 ('08~'17)	도로개설, 선착장, 공원조성 등 (68건)	도서개발촉진법
개발촉진지구사업 ('97~'11)	지역특화, 관광개발, 기반시설 등 (39건)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 ○ 도내 낙후지역 주요 개발사업의 문제점

- 낙후지역 주요 개발사업 중 오지종합개발사업과 도서종합개발사업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70%)와 지방비(30%)로 추진되기 때문에 '07년까지 오지종합개발사업은 전체사업량의 51%, 도서종합개발사업은 100%의 추진 실적을 보이고 있음
- 반면, 현재 사업규모가 가장 큰 개발촉진지구사업(4지구)은 총 사업비 7,611억원 중 국비와 지방비가 3,145억원(41.4%), 민자 4,463억원 (58.6%)으로 **민자부문의 비율이 매우 높고 실질적 투자실적이 미비**하여 사업추진에 따른 효과를 기대하기에 곤란함
- 이는 단위사업들의 효율성 저하로 민간부문의 참여가 미흡하기 때문임. 따라서 사업간 연계를 통한 광역화 및 민간투자 촉진이 가능한 **신발전지역종합발전구역 지정**을 통한 **사업추진이 필요함**

## 2. 정부 및 타 지역 동향

### ○ 국토해양부

- 현재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시행령(안)'이 입법예고 중이며, '08.8월 내 시행령 제정 및 규칙을 마련할 계획임

### ○ 경상북도

- '08.4.18. 경상북도 북부지역(11개 지역)을 신발전지역으로 전환하기 위한 워크숍을 개최
- 경상북도와 해당 시·군이 공동으로 신발전지역종합발전계획 수립 예정

### ○ 전라남도

- '08.12. 국토해양부의 1차구역 고시를 목표로 목포, 무안, 신안을 중심으로 한 신발전지역종합발전계획을 수립 중

## 3. 신발전지역종합발전구역 지정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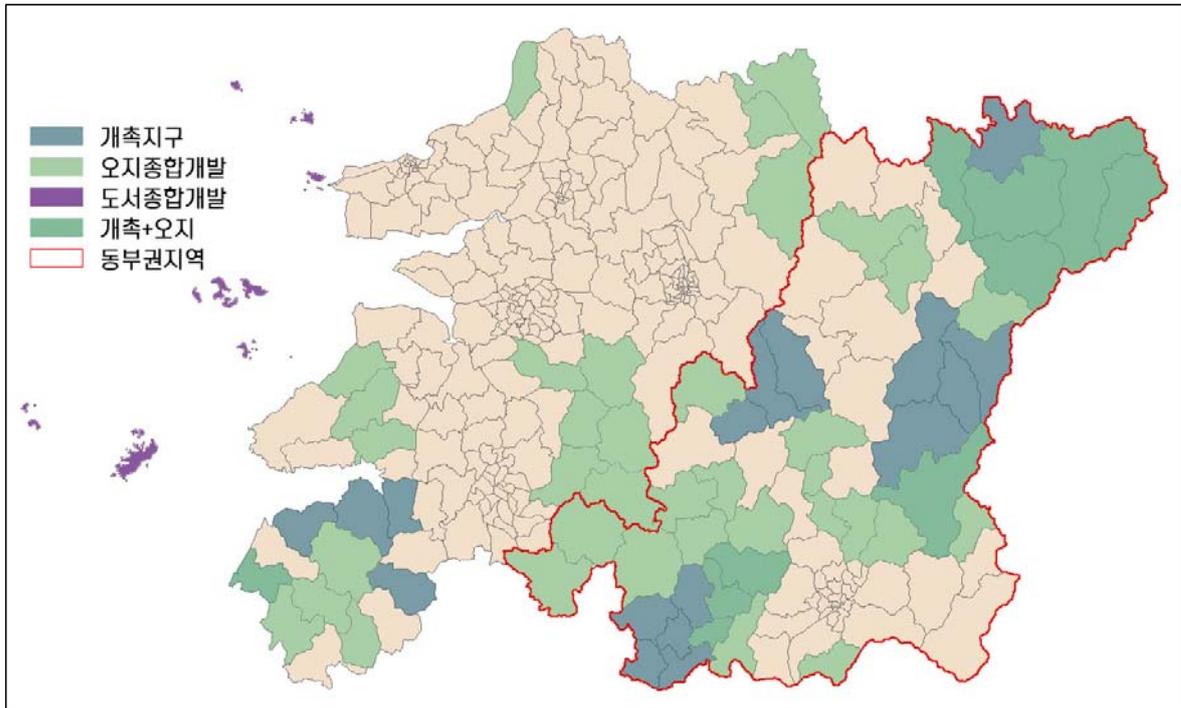
### ○ 신발전지역 기존사업의 규모

- 도내 신발전지역에 해당하는 기존의 낙후지역을 대상으로 추진된 사업은 오지종합개발사업, 개발촉진지구, 도서종합개발사업 등 총 1조 5,589억원(국비 5,740억원)의 규모임
- 신발전지역에 해당하는 개발촉진지구 사업의 경우 **도내 연평균 753억원(국비 183억원)이 투자되고 있음**(일정기간 개별법과 특별법의 병행 추진을 감안하더라도 사업영향력 큼)
- 신발전지역종합발전구역의 지정요건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

(단위 : 억원)

구 분		합 계	2007년 까지	2008년 이후
총 사업비(국비)		15,589 (5,740)	5,923 (4,063)	9,666 (1,677)
개발촉진지구	'96 ~ '11년	11,296 (2,741)	2,803 (1,879)	8,493 (862)
오지종합개발	'90 ~ '09년	3,255 (2,279)	2,682 (1,877)	573 (402)
도서종합개발	'88 ~ '17년	1,038 (720)	438 (307)	600 (413)

- 개별법에 의해 추진되어온 신발전지역(낙후지역) 분포



### ○ 신발전지역종합발전구역 지정의 필요성

- 신투법 제정이 현재까지 개별법을 통해 분리되어 추진되어온 기존사업을 통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측면(특히, 개별법의 개정을 통해 총 투자액의 총량이 감소될 수 있는 상황을 고려)에서 새로운 제도를 자연스럽게 적용하는 준비가 필요
- 도내 연평균 753억원이 투입되는 개발촉진지구 사업의 민간투자 유인을 위해서는 개별사업의 규모화 및 사업간 연계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신발전지역종합발전계획 수립을 통한 신발전지역투자촉진지구의 지정이 필요(사업간 연계부족과 광역적 차원의 시설 설치가 미비한 실정임)

신투법 시행으로 투자액의 총량이 감소할 우려가 있고, 제도의 취지에 따라 민간투자 촉진을 유인시켜 도내 낙후지역 균형발전사업의 실효성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신발전지역종합발전구역의 지정이 필요함

## IV. 전라북도 신발전지역종합발전계획 수립 전략

### 1. 특정지역 중심의 신발전구역 지정 방안

○ 기 지정되어 있는 개발촉진지구, 오지개발지구, 도서개발지구와 낙후 지역을 고려하고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인접 시·군 지역을 포함하여 신발전지역종합발전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

#### ✓ 대안1

- 정부가 1차 고시 구역으로 고려하고 있는 목포·무안·신안의 패턴과 유사한 성격의 지역을 중심으로 지정하는 방안(전남에 필적하는 유형)
  - 성장견인 시지역과 낙후도 순위가 높은 군지역 포함
- 전북
  - 남원·임실·순창(남원·장수·임실 / 전주·진안·임실 / 정읍·고창·부안 / 정읍·순창·고창 등)지역을 신발전지역종합발전구역으로 지정하여 낙후 지역의 집중개발과 중점성장을 유도하는 방안
  - 낙후도 순위(고려될 수 있는 48위권내 지역)

순위	지역	순위	지역								
1	신안군	9	군위군	17	순창군	25	곡성군	33	완도군	41	강화군
2	영양군	10	고흥군	18	청송군	26	장흥군	34	상주시	42	옹진군
3	장수군	11	진도군	19	강진군	27	보은군	35	청양군	43	부안군
4	산청군	12	의령군	20	진안군	28	영덕군	36	무안군	44	담양군
5	봉화군	13	합천군	21	남해군	29	구례군	37	고성군	45	괴산군
6	예천군	14	하동군	22	장성군	30	고창군	38	영동군	46	부여군
7	함평군	15	임실군	23	함양군	31	해남군	39	거창군	47	화순군
8	의성군	16	고성군	24	청도군	32	성주군	40	북제주군	48	남제주군

#### ✓ 대안2

- 개발촉진지구 등 정부가 그동안 추진해온 지정지역을 중심으로 지정 함으로써 투자된 국비의 효율화를 기대할 수 있는 방안(신발전지역종합 발전구역 지정에 따른 신규 국비투자를 최소화하면서 중복투자 저감유형)
- 전북
  - 기존 오지, 도서, 개발촉진지구 등을 중심으로 발전촉진지구, 투자촉진지구 1~2개지구만을 지정하는 지정면적의 콤팩트화 방안

## 2. 전북의 권역화에 따른 신발전구역 지정 방안

### □ 전라북도 동부권

- 낙후지역이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는 전북의 동부권 전역을 신발전 지역종합발전구역으로 지정
  - 동부권의 신발전지역은 산지 및 수질 보호 등의 규제가 증대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반대급부는 부족하여 낙후지역 고착화 우려
  - 특히 동부권은 국책사업으로 추진중인 태권도공원과 기업도시, 허브산업, 장류산업 등 관광, 지역특화산업의 발전잠재력이 매우 높은 지역으로 기존 사업과 본 신투법에 의한 후속사업이 상호 윈-윈할 수 있는 공간적 근접성과 계절적 한계를 탈피할 수 있는 지역에 해당
  - 또한 지균법에 의거하여 수립중인 지리산문화권 특정지역사업을 통해 지역내 SOC 구축이 순조롭게 추진될 경우 부족한 SOC 구축실태를 개선하고 민간부문의 투자를 유인하는 기회요인이 될 것임
    -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수립 중(국토해양부)

#### ✓ 신발전지역종합발전구역의 지정요건

- 신발전지역(오지, 도서, 개발촉진지구, 접경지역) 및 그 인접 시·군
  - 신발전지역 중에서 기반시설 설치 등으로 접근이 용이하고, 관광, 지역특화산업 등 발전 잠재력과 개발여건이 양호한 지역일 것
- 동부권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계획 수립을 통한 신발전지역종합발전구역 지정은 기존의 동부권 균형발전사업을 **실천적 균형발전사업**으로 현실화하는데 기여 가능한 방안

### □ 전라북도 내륙 및 서·남부권

- 인구 규모 측면에서 우위에 있고, 일부 신발전지역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동부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민간투자 유인에 유리한 인프라를 구비하고 있는 지역
  - 동부권과 대비되면서 신발전지역을 일부 포함하고 있으며, 개발여건이 양호한 인접 시·군이 입지하고 있어 신발전지역종합발전구역으로 지정 가능성 보유

-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특별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업계획 및 구역(지구) 지정과 동·서·남해안권발전 특별법에 따른 권역별 계획간에 보조를 맞추면서 조화로운 계획 수립

### 3. 전북권 전역 지정요구지역 중심의 신발전구역 지정 방안

- 전북권 전역에서 민간부문의 투자촉진이 요구되는 전체 후보지역중 지정요건에 부합되는 지역 전체를 발전촉진지구와 투자촉진지구로 구분하여 지정하는 방안
  - 본 신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타 특별법 및 개별법에서의 지구지정 중복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시행
- ✓ 대안1
  - 신발전지역종합발전계획 수립시 우선적인 지구(3~4개 지구 내외)만을 신발전지역종합발전구역으로 포함시키고 추가 지정이 요구되는 지구가 발생할 경우 추가 지정하는 방안
- ✓ 대안2
  - 종합발전계획 수립시 민간부문의 투자유인이 가능한 지구를 개발구상 수준에서 다수 지구(7~8개 지구 내외)를 신발전지역종합발전구역으로 우선 포함시키고 민간부문이 실질적으로 요구하는 구체적 계획내용은 지구별 계획변경을 통해 실시하는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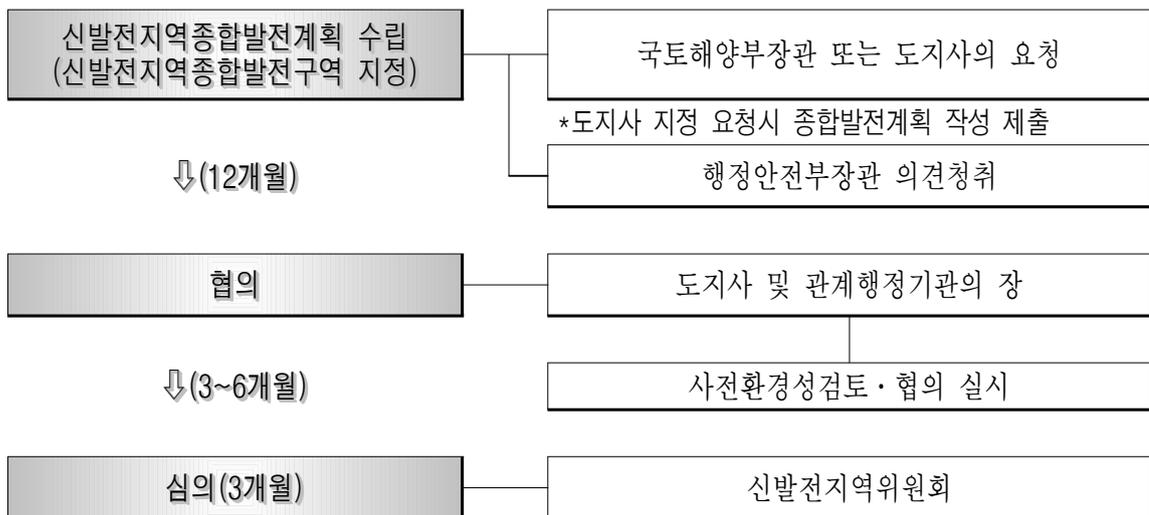
## V. 향후 대응방안

### 1. 신발전지역종합발전계획 수립 로드맵

○ 1차고시('08.12 : 국토해양부)를 목표로 하는 경우

- 계획수립 착수 : '08.6('08.7)
- 계획수립 종료 : '08.9('08.10)
- 신발전지역종합발전계획과 사전환경성검토 병행('08.11~12)
- 과업명 : 전라북도 신발전지역종합발전계획 수립

✓ **신투법 추진체계(1차고시를 목표로 할 경우 18~21개월 → 6개월 단축 필요)**



○ 2차고시(또는 정상적인 신투법 시행 '08.9.29)를 목표로 하는 경우

- 세미나(설명회) 개최를 통한 지역 공감대 형성 : '08.7 (도, 연구원, 시·군 관계공무원 및 지역주민 등) \* 필요시 동부권 등 권역구분에 의해 진행
- 계획수립 착수 : '08.9(10) ~ 12
- 계획수립 종료 : '09.6 ~ 9
- 이행절차 포함시 2010년 상반기 계획결정 예상
- 과업명 : 전라북도 (동부권 또는 ○○지구 중심)신발전지역종합발전계획

## 2. 신투법의 향후 동향에 대응

### ○ 신투법과 관련법령과의 관계를 고려한 체계적 계획수립

- 신투법의 제정으로 낙후지역 개발사업으로 추진중인 사업(오지개발, 개축지구, 도서개발)의 투자액 총량이 감소되지 않도록 관련법령의 개정사항을 주시하고, 이에 대응한 계획수립 필요
- 전북 동부권 등 신발전지역 해당 시·군별 외부 투자 의향기업(또는 새만금 등 기업도시 의향기업 등)이면서 투자를 결정하지 못했던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의 애로사항 등을 면밀히 조사하여 구역 및 지구지정 규모와 수요자 중심의 사업물량을 체계적으로 산출
- 36개 법률 72개 사항이 의제처리 되는 신투법의 실효성과 부담금 감면 및 제도특례의 실효성 진단
- 국토해양부가 신투법 적용 지역을 목포, 신안, 무안을 중심으로 한 서남권을 우선 고려하고 있음. 이에 향후 신투법 관련 규칙, 지침 등이 전북 신발전지역의 지정이 예상되는 지역에 적용될 경우 상대적으로 불리한 조건이 되지 않도록 도내 정치권과 자치단체의 역량 결집 필요

### ○ 신발전지역종합발전구역과 관련법의 중복지정 허용여부 등의 종합적 검토

- 중복 지구지정을 허용하는 경우(기존사업의 예산지원과 특례 적용은?)
- 중복 지구지정을 불허하는 경우 등

### ○ 타 법령 및 계획의 장점을 활용한 계획수립

- 지역의 여건에 따라 국가균형발전, 성장동력 창출, 국가경쟁력강화 등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과 이에 따른 개발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으므로 신발전지역종합발전계획은 타 법령 및 계획을 고려
- 도내 동부권 지역은 국토기본법,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추진중인 지리산문화권특정지역과 연계
- 도내 서남부권은 동·서·남해안권발전 특별법에 의해 향후 추진할 수 있는 동·서·남해안권개발구역과 백제문화권특정지역, 해양농경 역사문화권특정지역 등을 연계한 계획수립 고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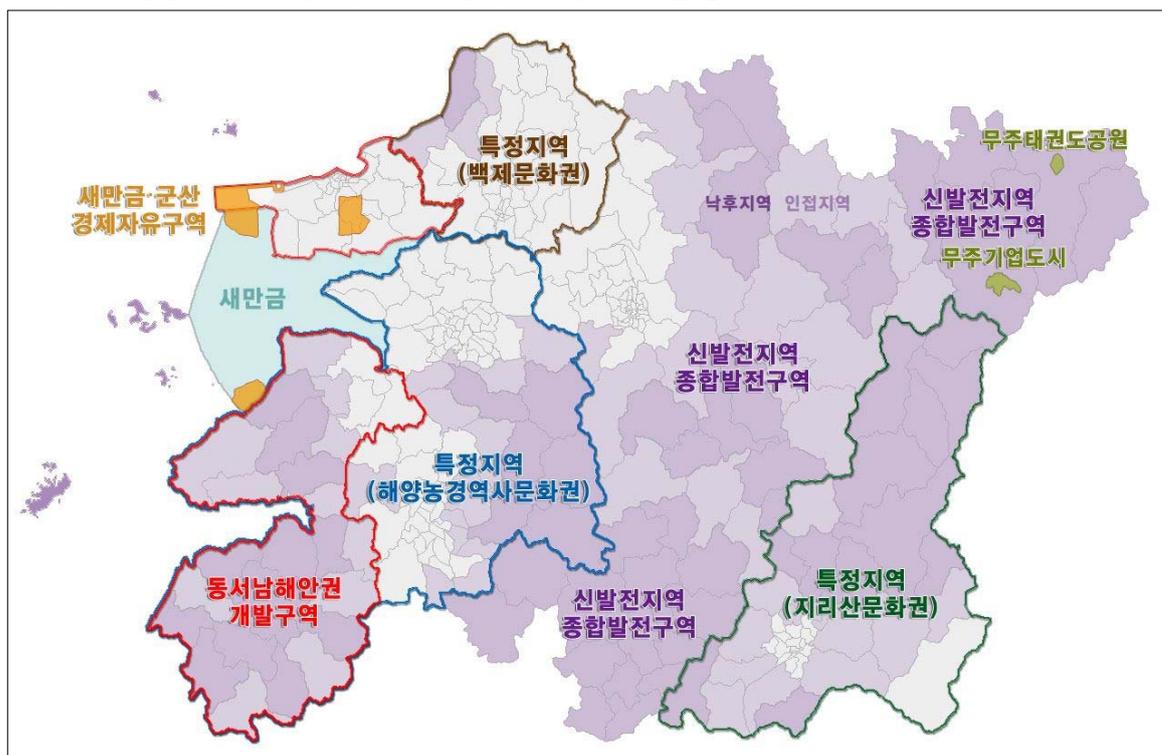
### 3. 신투법 시행을 계기로 의제 관련법 적용지역 진단

○ 신투법 시행을 계기로 전라북도 내 시·군별(공간단위별)로 적용되고 있는 의제를 담은 개별법 및 특별법의 효과와 적극적 활용을 위한 진단과 방안의 강구

- 전라북도 주요 개발사업 관련법 및 구역·지구

구분	구역·지구·지역 등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신발전지역종합발전구역, 신발전지역발전촉진지구 신발전지역투자촉진지구
동·서·남해안권발전 특별법	동서남해안권개발구역, 동서남해안권첨단과학기술단지 동서남해안권투자진흥지구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내부토지이용계획에 따른 단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백제문화권특정지역, 해양농경역사문화권특정지역 지리산문화권특정지역, 개발촉진지구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무주태권도공원

- 개별법 및 특별법에 의한 전라북도 시군별 영향 권역



• 의제를 담은 개별법 및 특별법 해당 지역

구분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완주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
신발전지역종합발전구역			○	○	○	○	○	○	○	○	○	○	○	○	○
동서남해안권개발구역			○											○	○
관광레저형기업도시										○					
경제자유구역			○												○
특정 지역	백제문화권			○											
	해양농경역사문화권				○		○							○	○
	지리산문화권					○		(○)		○					
태권도 공원										○					